

社 說

SOC예산을 동계 준비 비용으로 봐선 안 된다

강원도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은 참으로 어렵다. 매년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다. 동서를 관통하는 유일의 교통 인프라인 왕복 2차선의 영동고속도로를 4차선화할 때 그랬다. 강원인들이 끈질기게 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연장 때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중앙고속도로는 춘천에서 단절돼 있다. 강원도의 세밀한 준비와 강력한 메시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 실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강원인들은 최근 강원도 SOC사업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각에 절망감을 느낀다.

정부 차원에서 계획한 강원도 SOC 구축비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비용으로 계산해서는

곤란하다. 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 (정부)승인 내역'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예산 11조4,311억 원(동계조직위 제외) 중 77.5%인 8조8,472억 원은 국가 차원에서 이미 계획한 SOC사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SOC는 원주~강릉 철도 3조8,962억 원, 동흥천~양양 고속도로 2조3,841억 원, 제2영동고속도로 1조5,397억 원, 경의선-공항철도 3,100억 원, 영동고속도로 임시IC 312억 원, 양양국제공항 7억 원, 국도 6호선(4개소) 5,203억 원, 국도 59호선(2개소) 1,650억 원 등 8개다.

이 중 규모가 큰 사업 대부분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 정부 차원에서 검

토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강원도의 SOC사업비까지 동계올림픽 비용으로 계산해 과잉투자라 본다면 이는 강원인들의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교통망은 한 지역의 경제를 좌우하는 물류경쟁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하지만 강원도의 교통망은 수십 년째 전국 최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도의 면적은 1만6,613㎢로 경북의 1만9,026㎢에 이어 전국 시·도 중 2번째로 넓다. 하지만 도로연장(길이)은 2010년 9월 현재 9,650km로 도보다 면적이 6,481㎢

나 작은 경기도의 1만3,086km보다 훨씬 짧다.

이 때문에 면적 대비 도로율도 전국 최저인 0.58(km/㎢)로 경기도의 1.29는 물론 경북의 0.64보다 훨씬 낮다. 도의 4차선

**올림픽예산 11조4,311억 중 SOC예산 77.5%
도 SOC는 동계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현안
이를 비용으로 계산 과잉투자라는 인식 곤란**

이상 비율은 18.8%로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전북의 53.6%는 물론 도 다음으로 낮은 경북의 22.5%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불공정한 투자가 '지역별 격차 심화'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낸 것이다.

도로 등 열악한 SOC는 수십 년간 강원도 산업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됐고 이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 약화로 이어졌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오랫동안 정착적인 이해관계와 정권의 투자정책에 따라 이미 수립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보다 우선시되는 신규 SOC사업이 등장, 정치력이 미흡한 강원도 SOC 확충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강원도 SOC 확충은 국가 발전적 틀에서, 그리고 통일한국의 국토계획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하도급 보증서 미발급 업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해 하도급 대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13개 업체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 명단을 지방 자치단체에 넘겨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적발된 건설사가 지자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4,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업체 35곳도 적발돼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위윤기자

‘건설공사 분리발주’ 업계 신경전

종합건설업 “분리발주시 공사비 상승·낭비 커” 전기공사업 “통합발주 부실시공 가능성 높아”

최근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 대상이 구체화되면서 강원도내 건설업계에서도 찬반 의견으로 엇갈리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분리발주 대상이 구체화하고 지자체 계약담당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행자부 개정 예규에는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대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른 공종과 시공장소(작업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로 구체화했다.

이처럼 분리발주 대상공사가 구체화되면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찬반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전기공사법과 통신공사법에 분리발주가 의무화돼 있는 전기와 통신업계의 경우 분리발주 활성화에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고, 아직 법제화되지 못한 설비업계는 행자부 개정 예규를 바탕으로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리발주의 정당성을 알리고 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사 간 재하도급 문제와 공사 책임주체 불명확성에 따른 분쟁이 확산될 것이라며 분리발주에 대한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다.

춘천 A종합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적격심사 낙찰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10~20% 상승하며 입찰, 견적, 계약서 작성 등 행정력과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공사에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통합발주를 할 경우 하도급 단계에서 원도급사가 가격을 후려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점이 더욱 커진다”고 반박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公共공사 입찰 ‘하도급법 위반 확인서류 제출’ 없앤다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하도급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발주처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조해 공공입찰 참가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발주처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사가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

공정위, 발주처가 나라장터서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 개선
입찰참여 건설사 부담 완화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를 발급 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2~3일이 소요되는 데다 확

인서류 신청·발급 건수가 연간 무려 4000여건에 달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 4월에는 국무조정실 소속 민간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손들 밑 가시’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작년 11월 기재부에 입찰참가 기업의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조달청과는 모든 발주처가 입찰참가기

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나라장터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가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조달청이 나라장터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위해 자신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한 별도의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모든 발주처들도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나라장터에 개설된 ‘윈스톱(One-Stop)’ 메뉴를 통해 입찰참가 기업의 법 위

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변경되었던 증명서류 발급 수량 절차가 사라져 공공입찰의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입찰참가 기업 및 발주처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 신청·발급 업무가 모두 픽스로 이뤄지는 등 과도한 업무의 거래비용 낭비가 심했다”면서 “이번 개선으로 입찰참가 기업과 발주처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250곳 제재

국토부, 동종 간 하도급 등 35곳도 과징금 부과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사가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불이행 업체 25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자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는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KISCON을 통

해 입수한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발급업체 657개사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또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35개사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기자